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관광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9월 1일
- 회부일자 : 1999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도로법('99.2.8) 및 동법시행령('99.8.6)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규정과 관련한 사무를 조정하고,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5호 및 제7호 개정에 따라
관련규정 신설 및 일부 삭제
 - “광고탑, 광고판,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선정한다”로 신설
 - “별표1의 제6호의 경우”를 삭제
-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
 -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
 -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

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

- 도로법 제44조 제4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
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
- 도로법 제8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
부당이득금을 “변상금”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(신설)
-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
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본 조례의 모법인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무의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,

첫째,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는

광고탑, 광고판,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표시면적을 종전에는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으로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

둘째, 점용료의 감면에서는

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던 포괄적인 규정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

셋째,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도

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화 시키고 변상금 징수요율을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 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